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96호 2024. 7. 1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2080호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2081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사천시 조례 제2082호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7
○ 사천시 조례 제2083호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2084호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13
○ 사천시 조례 제2085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 사천시 조례 제2086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사천시 조례 제2087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사천시 조례 제2088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사천시 조례 제2089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7
○ 사천시 조례 제2090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사천시 조례 제2091호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36
○ 사천시 조례 제2092호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9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42호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전부개정규칙----- 45
○ 사천시 규칙 제843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89
○ 사천시 규칙 제844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95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9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02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00
- 사천시 공고 제2024-1034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0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0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사천시민(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사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과금 지급)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1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 · 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 · 운영 변경사항 등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0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2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3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살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읍·면·동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의 역량 강화 사업
2. 지역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면·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 및 시·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추진상황 등 공개)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업무에 대하여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4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사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5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과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6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문
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을 ““다문화가족”이란 시
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사천시의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사천시의 각종”을 “시의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을 “지원대상은”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 제외한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시청, 창원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를 “협의회 회의는”으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소집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7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객관적이”를 “객관적인”으로, “신청이”를 “기피 신청이”로, “위원의 결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피하여야”를 “위원회는 의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6. 제6항에 따라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8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구매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89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명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으로, “문화재 보호”를 “국가유산 보호”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로, “문화재 보호활동”을 “국가유산 보호활동”으로 한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으로 한다.

제3조(「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사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1조 중 “향토문화유산을”을 “향토유산”로,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이란”을 ““향토유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을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를 “향토유산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향토유형문화유산 또는 향토무형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무형문화유산”을 “향토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을”을 “향토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향토문화유산에”를 “향토유산에”로,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주변”을 “향토유산 주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향토유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19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사천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제3항”을 “「사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으로”를 “향토유산으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사천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을 “사천시 향토유산 관리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명”을 “향토유산명”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별표 3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90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대대장”을 “1대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천팀장”을 “사천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6. KT사천지점장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11. 사천해양경찰서장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91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을 위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3조(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2.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사천시민의 안전의식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2092호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
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2.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장소
2. 행사 주최·주관·후원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사천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공질서 유지 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천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사천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천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11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천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규칙 제84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인계
인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천시장의 사무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책임 한
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② 담당관·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6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참관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부시장, 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장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항	목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 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 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 업무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 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단,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부과·징수 개인별 내역 별도 포함)
16.	비품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19.	차량 목록

항	목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서식]

20 . . .기준

사무인제·인수서

사 천 시
(○ ○ ○)

사 무 인 계 · 인 수 서

1. 20 년 월 일 현재 사천시 업무붙임을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 명 (인)

○ 인수자: 직 위 성 명 (인)

○ 참관인: 직 위 성 명 (인)

<항목 1>

시 정 방 칩

시정방침	세부시행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

기구 조직 현황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국	담당관	과					읍	면	동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

정·현원 조서

구분	계	일반직								연구 구 직	지 도 직	전문 경력 관	정 무 직	별 정 직	비고
		소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현원														
본청	정원														
	현원														
의회 사무국	정원														
	현원														
보건소	정원														
	현원														
농업기술 센터	정원														
	현원														
사업소	정원														
	현원														
출장소	정원														
	현원														
읍·면·동	정원														
	현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4>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	직명	성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 직속기관, 담당관·과·소 사무분장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5>

역점 추진 업무 목록

소관 부서	사업명	내용		목적	현황	비 고
		시행연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지 시				진척사항	소관부서
구 분 (지시자)	일자	건명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7>

중요 미결 업무조서

사업명	사업내역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정완료 시 기
	소관부서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공약 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 지역 또는 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민												
대기관												
대내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소관부서	건명	내용		계속추진 현황	목적또는 사유	예정완료 시기
		시행연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관부서	건명	내용	현재진행상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사건명	사건 개요	당사자		최초재판		진행상황	소관 부서
		원고	피고	일자	관할 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2>

관인·공인 목록

명칭	수량	규격	재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간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3>

보존문서 목록

관과소	합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4>

비밀 소유 현황

등급별 관·과·소별	비밀				대외비	음어 자재	비고
	계	I 급	II 급	III 급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관과소	편찬연도	서류장부명	책수	보관장소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

비품 목록

<항목 16-1>

1. 관사 비품 목록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2>

2.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3>

3. 도서 목록

소관별	총수량	비고

※ 별도 담당관·과·소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중요 소모품 목록

관과소	품종	규격	단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 이월	수입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

장비 목록

<항목 18-1>

행정장비 목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별도 담당관·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별도 담당관·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소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9>

차량 목록

차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

재고 물품조사서

<항목 20-1>

유류 수불조사서

유종별	단위	규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도	취급부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2>

약품 수급조사서

관과소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수입	불출	잔량			

위 사실을 확인함.

20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3>

양곡 수불현계표

품명	단위	단량	포장재료	수량			비고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관과소	자재명	단위	규격	수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	단위	규격	수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입	불출	잔량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2>

재산조서

구분		토지		건물		기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합계							
공유 재산	소계						
	행정 재산	계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통 재산	보존 재산					
		잡종 재산					
국유 재산	소계						
	행정 재산	계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

채 권 · 채 무 조 서

<항목 23-1> 채권조서

관과소별	건명	채 권				채무자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 또는 사유 (조건)	
계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 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소관 부서
			금액	이율 및 조 건	상환 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항목 24-1>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2> 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입) ①	지출액 ②	잔액 ① - ②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관별	회계별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구분	수입	지출	잔액	예금종류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			예산액	배정		집행잔액		비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액	금액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7>

적립금 조서

종별	금액	기간	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	수입		불출		잔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조 부서별	건명 (내역)	예산액	배정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전도				정산			지출과목	
일자	금액	목적	출납 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세항	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제점	조치의견	
			인계자	소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2>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재난유형	행동매뉴얼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규칙 제84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3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된다”를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27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 ① 총괄부서는 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총괄하여 가입하고,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보유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7. 1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장 · 시의회위원장 · 부시장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 본청 · 시 의회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시 본청 · 시 의회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시 본청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시 본청 · 시 의회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미만)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대형은 제외)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단위부서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 단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 단위부서	
	진료차	·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 단위부서	
	트레일러	· 단위부서	
	렉카차	·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24. 7. 11.>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차 · 앰블런스 · 교통약자 · 산불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방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의 특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 - 가 2 - 10

② 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 - 다 1 - 3

공용차량 현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총계	승용(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구분	총계	승용(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합계																		
구입																		
임차																		

3. 공용차량 구입(임차) 및 처분 현황

구분	총계	승용(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구입																		
임차																		
처분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규칙 제84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고시 제2024-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년 7월 11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변경	시도		시도 6호선	곤양면 대진리 일원	4,794㎡	곤양면 대진리 840-4	곤양면 대진리 856-2	-	0.32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시도6호선[한월지구 선형개량공사(2공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고시일로부터 1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도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사업인정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서부 중로3-1, 소로2-3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시도6호선[한월지구 선형개량공사(2공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81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서부 중로3-1, 소로2-34호선)사업

나. 명 칭 : 시도6호선[한월지구 선형개량공사(2공구)](중로3-1, 소로2-34호선)

3. 면적 또는 규모

가. 중로3-1호선: L=320.0m, B=12.0m

나. 소로2-34호선: L=26.0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도로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 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6.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조서 참조

토 지 세 목 조 서 (1)

순번	소재지 (곤양 면)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당초	변경	증·감		
1	대진리	840-3	도	883	273	273		경상남도	
2	대진리	산32-5	도	3,003	99	99		사천시	
3	대진리	산93-1	임	1,633	706	677	▼ 29	사천시	
4	대진리	840-5	도	7	7	7		경상남도	
5	대진리	840-8	도	79	78	79	▲ 1	사천시	
6	대진리	840-6	도	79	79	79		경상남도	
7	대진리	817-1	도	73	73	73		경상남도	
8	대진리	816	도	89	89	89		경상남도	
9	대진리	1365-1	구	149	28	74	▲ 46	농림축산식품부	
10	대진리	1347-1	도	1,577	95	193	▲ 98	건설교통부	
11	대진리	산95-1	도	345	293	293		사천시	
12	대진리	산97-1	도	182	96	182	▲ 86	사천시	
13	대진리	산97	임	9,593		154	▲ 154	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 *****월드2 에이-****
14	대진리	840-4	도	255	134	134		사천시	
15	대진리	827-2	구	1,361	166	486	▲ 320	농림축산식품부	
16	대진리	835-2	도	535		54	▲ 54	사천시	
17	대진리	836-3	도	469		81	▲ 81	사천시	
18	대진리	840-7	도	182	118	182	▲ 64	경상남도	
19	대진리	838-4	도	206		2	▲ 2	사천시	
소 계				20,700	2,334	3,211	▲ 877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공고 제2024-102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7. 11.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2024. 7. 11. ~ 2024. 7. 26.(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5루9832	i30	이*환	2024. 7. 5.	차량 대출 후 차량이 사라져 운행정지를 신청함.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공고 제2024-1034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기본이념·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831-3084, FAX: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민의 경제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은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노력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
4.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제9조(우선 구매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과장, 주민복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다.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3호 중 “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②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6호

5.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③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재정지원(안 제8조)
- 홍보지원(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재정지원) 13,500천원
(홍보지원) 1,440천원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예상연간 비용이 14,94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관 련 법 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

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춘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을 갖춘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